

2.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-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결과 48%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
-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0년도 2월 고지분부터 20.15%를 인상하였고, 2001년 3월 고지분부터 25.6%를 인상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인상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른 톤당 최저 240원 최고 680원을 최저 300원 최고 700원으로 인상하고
- 업무용으로 사용량에 따른 톤당 최저 540원 최고 700원을 최저 650원 최고 9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
- 영업용은 사용량에 따른 최저 600원에서 최고 740원을 최저 700원에서 최고 1,000원으로 인상하고 있고
- 욕탕1종은 사용량에 따른 최저 360원에서 최고 550원을 최저 430원에서 최고 660원으로 인상하고, 욕탕2종은 사용량에 따른 최저 660원에서 최고 1,800원을 최저 1,000원에서 최고 2,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임.

□ 검토보고

- 파주시의 톤당 수도요금은 생산원가가 633원으로 현행 톤당 504원을 징수하여 톤당 129원의 적자 요인이 있어 연간 15억 5,537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던 실정으로
- 25.6%의 다소 인상폭이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그 동안 공공요금의 인상이 일반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해 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
- 수도 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현실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
서 면 답 변 서

질 문 의 원	류 한 철	질 문 일 시	'00. 12. 21(목)
제 목	상수도요금중 욕탕과 겸업시 어떤요금을 부과하는지?		

[질문요지]

- 상수도요금중 욕탕1종 요금이 타업종보다 싼 것 같은데 욕탕과 겸업시 어떤요금을 부과하는지?

[답변내용]

- 욕탕과 타업종 겸업시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합니다
- 첨부 : 욕탕1종 부과내역 및 영업용 부과 현황자료 1부. 끝.

확인자 상하수도과장

강 경 배

